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박미영 의원 발의】



2019. 12. 5.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86호로 2019년 11월 13일 박미영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라.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 사업 등(안 제5조~제6조)
- 마. 장기요양요원의 보호(안 제7조)
- 바.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반영

다. 입법예고(2019. 11. 15. ~ 11. 19.)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건은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 안 제4조 ~ 제6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이에 해당되며, 우리구에는 2019년 11월 기준 총 140개소의 장기요양기관에 6,251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은 노인 돌봄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전문적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로 바라보는 등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낮고 현실적 처우도 열악한 실정임.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사기 진작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 ④ (생략)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⑥ (생략)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법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방문목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로 한다.
3.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 나.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구강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주·야간보호,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단기보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 라.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 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 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

②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